

훈 련 위 탁 계 약 서

본 계약의 “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평생교육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위탁훈련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은 “을”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위탁계약의 범위로 한다.

훈 련 과 정 명	훈련일정	훈련기간	학급정원	위탁인원	1인당 훈련비	훈련생명단
특송업체 X-ray관독요원 전문교육과정	2010. 6. 29. ~ 6. 30.	2일 (16시간)	25명	명	150,000원	“별첨”

제2조(계약기간 및 인원)

가.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생이 수료되는 시점까지 의미한다.

나. 위탁계약 인원에 대한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훈련생 명단(“별첨”)을 “을”이 훈련개시 일까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본다.

제3조(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 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5조(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통보의무)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퇴직, 전보 등)발생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의 조문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별 첨】

교육과정명		2010년 2분기 특송업체 X-ray판독요원 전문교육과정				
계산서발행	회사명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① 교육비 납부사업장 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교육생 이력사항	구분	훈련생	훈련생	훈련생	훈련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번 사업장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자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타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취득예정자	<input type="checkbox"/> 자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타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취득예정자	<input type="checkbox"/> 자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타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취득예정자	<input type="checkbox"/> 자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타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취득예정자	
	부서					
	직위					
	이동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전화번호					
	E-Mail					
귀사담당	교육담당자성명	교육담당자부서		교육담당자 직위		
	귀사 전화번호	E-Mail				
	훈련비	송금은행(KCTDI)	국민은행	송금예정일	년 월 일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을】

훈련기관명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평생교육원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3

대표자 : 박진헌

